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1412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8. 11.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6. 접수 제36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9가소146742호),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26,955,250원 및 그 중 14,468,21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37946호).

다. D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F과 자녀인 D, C, 피고, G, H가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8. 11. 5.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6. 접수 제36690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D에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피고가 모은 종자돈을 보태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도 피고가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러한 피고의 기여를 고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대전 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 동구 대 983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9833.6분의 61.704. 끝.

